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 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위탁사항 정비(안 제26조제6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업무를 근거 조항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한정심사, 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위

탁내용 정비(안 제26조제10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1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차수별로 규정(안 별표 5)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제6호 중 “법 제112조”를 “법 제112조제1항”으로,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시험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26조제9항 중 “제8항”을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5 제2호 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노목부터 코목까지를 도목부터 토목까지로 한다.

노. 법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	법 제166조 제7항제1호의2	15	22.5	30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9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26조제1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p> <p>⑤ 삭제</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p> <p>1. ~ 5. (생략)</p> <p>6. 법 제112조에 따른 <u>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7. ~ 13. (생략)</p> <p>⑦·⑧ (생략)</p> <p>⑨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8항에</u></p>	<p>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⑥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법 제112조제1항</u>----- ----- <u>시험업무</u></p> <p>6의2. <u>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u></p> <p>6의3. <u>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u></p> <p>7. ~ 13. (현행과 같음)</p> <p>⑦·⑧ (현행과 같음)</p> <p>⑨ ----- <u>제8항 및</u></p>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  
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에 위탁한다.

1. ~ 4의4. (생략)

<신설>

<신설>

5.·6. (생략)

<신설>

제11항-----

-----

-----

---

⑩ -----

-----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  
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6. (현행과 같음)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9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  
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  
체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